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나 업무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Q**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월급제 아파트 경비원, 보일러공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청구 여부

**A** 근로계약은 아파트의 경비, 관리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었으므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에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직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적용제외인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031-877-7522)

**Q**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산한 월급제근로계약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A**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은 기본임금 외에 시간의 근로, 야간 및 휴일근로 등에 따르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숙·일직과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지급여부

**A**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수발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는 등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은 원래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이나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지만, 숙·일직시 그 업무내용

전·기·상·식

한전포천지점 고객지원과 **노상곤**



**Q** 건조물 신증축에 지정되는 전주를 옮길 수 있는가?

**A** 신증축 부지내에 위치한 한전의 배전선로가 건조물의 신증축에 지정되어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전선로의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설공사비를 부담하여 해당 전주를 다른 위치로 옮겨드립니다.

문·창고·주차장 등 건조물의 효용을 저해하는 경우, 부지내의 전선로와 건조물과의 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전주시설은 이설신청으로부터 현장조사 및 설계, 외선시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이설공사 완료시까지 약 2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Q** 지정전선로 이설 신청절차?

**A** 지정전선로의 이설은 이설 희망고객이 한전창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신축과 구내활용에 지정되는 전선로 이설신청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하고 한전직원이 현장 방문시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설 신청시 한전에 제출할 서류는 지정배전선로 이설신청서 이외에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 구내활용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농지활용의 경우에는 토지대장등본과 현장사진 등의 증빙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문의: 한국전력 포천지점 고객지원과(☎539-0311)

의·학·상·식

포천병원 내과 과장 **박선수**



위암의 초기진단

위암의 치료는 조기발견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치료성적이 좋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실이다. 위암은 크게 나누어 조기위암과 진행위암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기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95%이상으로 완치율이 높지만 반면에 진행위암의 경우 그 병기(病期)에 따라 15~80%까지 생존율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수술 후에도 항암요법을 해야 하는 등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어 조기발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위암의 경우 조기진단이 잘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위암의 초기단계에는 모든 증상이 모호할 뿐 아니라 위암의 특이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증상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인들 뿐 아니라 의사들조차도 가볍게 생각할 정도로 일반 소화기관 계통의 질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소화불량이나 오심, 구토, 복부 팽만감, 불쾌감, 전신권태, 가슴앓이 등등)과 유사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소화기계 증세로 간주해 버리기 쉽다는 점. 셋째로는 위암의 경우 모든 증상이 아주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50% 이상) 위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심각한 자각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하여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초기에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증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위암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 많이 발생하며, 잘 발

생하는 연령이 50~60대에서 전체 위암 환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40세 이상의 경우 의심 나는 소화기 증세가 계속되면 반드시 위내시경을 시행해 보는 것이 조기발견의 첩경이다.

위암은 위 내에서의 발생부위 혹은 발생양상에 따라 그 증상이 현저하여 조기검사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위암이 위 분문부 혹은 유문부에 발생할 경우는 처음부터 연하곤란이나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 등의 통과장애를 느끼게 되고, 궤양성으로 혈관을 침범한 경우에는 속이 쓰리거나 출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암의 증상은 소화기증상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소화제 등으로도 잠시 호전되는 기미가 나타나거나 곧 출혈이 이때는 반드시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찾아 위 내시경 등의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40세 이상의 연령에서 이유 없이 소화불량이 1~2주 이상 장기간 지속되면 일단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이 위암 조기발견의 첩경이다.

☎포천병원(031-539-9114)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재산소유형태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인데, 민법 제69조(통상총회)에서는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조(총회의 소집)에서는 "총회의 소집은 1주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관례를 보면, "일부 종중원들이 정기총회의 연기를 선언한 총회장의 결정에 반대하여 사전에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적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개최한 정기총회는 적법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2408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종중의 일부 종중원이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장소가 아니고, 정기총회의 장소로 지정된 바가 없는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하였다면 그 총회장선출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Q** [이례적 장소에서 일부 종중원이 개최한 종중 정기총회의 효력]

甲종중의 일부종중원은 종전에 관행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던 장소가 아니고, 정기총회의 장소로 전혀 지정된 바가 없는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총회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정기총회가 유효한지?

**A** 종중의 성립 및 구성원에 관하여 관례를 보면,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

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78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종중이란 공동묘역·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그리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종중의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자 피해)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전 인격에 깊은 상처와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 시기의 성폭력경험은 피해자에게 단기적 영향과 함께 장기적 후유증을 남

기는데 대체적으로 심리·정서적 영향, 신체적 영향, 행동에의 영향, 성적 발달에의 영향, 사회적 기능 및 교육에의 영향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다차원에서 나타난다(배명미, 2002).

또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부적절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상실감을 겪는데 자아 존중감의 상실, 존엄성의 상실, 안전감 상실,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상실 등이 그것이다(Park, 1990, p.34). 제1차 피해로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

적·심리적 피해를 들 수 있다. 첫째, 신체적 피해로는 성폭력범죄의 수단인 폭행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많은 신체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 아드레날린의 급증, 심장박동 증가, 떨림, 얼얼한 듯한 느낌, 입안이 마르거나 쾌쾌한 냄새와 같은 특정한 감각의 증가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육체적 반응의 일부는 범죄행위가 종결된 후에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으며, 흔히 나타나는 신체적 피해로 골반통증, 임신, 두통, 소화기장애, 월경 전 증후군, 심인성 발작, 불면증, 식욕장애, 성욕감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반응으로 고통 받게 되며 이러한 반응들은 범죄발생 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2006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세무지식이 없어 장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 기증에 의거 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꼼꼼히 잘 챙겨 놓고 있습니다.

**A**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5월 31일까지 전년의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 개인별 각각의 소득을

종합하여 확정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자는 성실한 장부기장과 증빙자료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 소기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소득기준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고시하여 추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자에 대하여는 복식기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의무불이행가산세를 본세에 더하여 추가로 부

과합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성실히 잘 보관하고 계신다면 금년이 최초 사업년도이므로 복식기장이 아닌 간편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규모가 상당히 클 경우 원가계산 및 재고관리 등 복식기장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귀하가 처음으로 사업을 하셔서 대단위 시설투자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관측비 지출 등으로 손실을 보았다면 꼭 복식기장을 하셔서 손실 난 사실을 신고 하셔야 하며 당기의 손실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받도록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성실히 챙기는 것입니다.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 병원 세탁물 전문



최인환 대표



- 풍부한 노하우
- 저렴한 가격
- 위생적인 세탁

최첨단 기계도입 · 양질의 세탁문화를 열어가는 완주섬유

## 이제부터~ 세탁 걱정 끝!

☎ 031) 534-3041 Fax. 031)534-3042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373